

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건설근로자법)

[시행 2022. 2. 18.] [법률 제18425호, 2021. 8. 17., 타법개정]

고용노동부 (지역산업고용정책과) 044-202-7419

제7조의2(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)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·식당·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6. 4.>

[전문개정 2007. 12. 27.]